

다전공 운영규정

(제정 2017. 9.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4조제3항 및 제34조에 따라 다전공의 이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0.9.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수전공이란 주전공 이외에 타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학과(전공)의 학위를 복수로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8.20.>
2. 부전공이란 주전공 이외에 타 학과(전공)의 과목을 일정한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학위증에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8.20.>
3. 연계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구성한 전공을 말하며,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자기설계연계전공과 공공인재연계전공을 포함한다. <개정 2022.6.17.>
4. 융합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구성한 전공을 말하며, 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학융합전공과 복수의 마이크로전공을 조합한 마이크로 융합전공을 포함한다. <개정 2019.2.18., 2021.8.20., 2023.12.15.>
5. 마이크로전공이란 주전공 및 복수(부)전공 외에 타 학과(전공)의 과목을 일정한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학위증에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8.20.>

제3조(세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다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편람」으로 정한다.

제2장 복수전공

제4조(범위) 복수전공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복수전공이 제한되는 사범대학 및 보건계열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전공),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에 대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교직이수자의 교직 복수전공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20.>

제5조(신청자격) 복수전공의 신청자격은 신(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다만, 음악학과는 실기 및 면접을 통과한 자에 한정하여 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신청절차 등)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복수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 ② 학과(전공)별 복수전공 이수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인원, 제한사유, 전형방법 등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강지도)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의 수강 및 진로 지도는 복수전공 학과장(전공주임)이 담당한다.

제8조(이수 및 포기)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편람의 교육과정 이수기준표에서 정하는 기본과정(전공기초 + 전공필수 +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졸업시험·자격증대체 및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졸업논문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② 복수전공의 이수 여부는 복수전공 학과(전공)에서 졸업사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③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복수전공 이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부전공 또는 마이크로전공 이수조건을 충족한 경우 부전공 또는 마이크로전공으로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8.20.>

④ 복수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복수전공 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제9조(학위수여) 주전공(제1전공) 및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복수전공 이수자에게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10조(실험실습) 실험실습 또는 기자재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과(전공)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실험실습비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장 부전공

제11조(범위) 부전공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이 제한되는 사범대학 및 보건계열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전공) 및 융합전공에 대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자격) 부전공의 신청자격은 신(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다만, 음악학과는 실기 및 면접을 통과한 자에 한정하여 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신청절차 등)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부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② 학과(전공)별 부전공 이수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인원, 제한사유, 전형방법 등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수강지도)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의 수강 및 진로 지도는 부전공 학과장(전공주임)이 담당한다.

제15조(이수 및 포기) ① 부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편람의 교육과정 이수기준표에서 정하는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만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② 부전공의 이수 여부는 부전공 학과(전공)에서 졸업사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③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부전공 이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마이크로전공 이수조건을 충족한 경우 마이크로전공으로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8.20.>

④ 부전공 이수자가 부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부전공 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제16조(실험실습) 실험실습 또는 기자재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과(전공)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실험실습비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연계전공

제17조(전공개설) ① 연계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연계전공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융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계전공의 신설은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육혁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다만, 연계전공 주관학과에서 연계전공의 폐지를 희망하거나 연계전공 개설 후 4학기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최근 2학기동안의 이수인원이 평균 10명 미만인 경우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육혁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③ 연계전공에 주임교수를 둔다.

④ 본교에 개설된 연계전공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연계전공 참여학과에서 기 개설한 교과목 <개정 2020.9.1.>

2. 9학점 이내에서 신설하는 연계교과목 <개정 2020.9.1.>

3. 그 밖의 학과(전공) 및 교양 과목으로 개설한 교과목 <개정 2020.9.1.>

② 교육과정은 이수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45학점 이상으로 편성하며, 필요에 따라 전공필수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

③ 삭 제 <2023.12.15.>

제19조(신청자격) 연계전공의 신청자격은 신(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제20조(신청절차 등) ① 연계전공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연계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② 학과(전공)별 연계전공 이수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인원, 제한사유, 전형방법 등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이수 및 포기) ① 연계전공은 36학점 이상의 연계전공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공(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연계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경우에는 15학점 범위에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1., 2020.9.1.>

② 연계전공의 이수 여부는 주관학과에서 졸업사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③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가 연계전공 이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또는 다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가 연계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연계전공 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제22조(학위수여) 연계전공 이수자에게는 주전공 및 연계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23조(자기설계연계전공) ① 자기설계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상담을 통해 자기설계연계전공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속 학과장을 거쳐 융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융합교육지원센터는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육혁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22.>

② 자기설계연계전공은 주전공 학과(전공), 타 학과(전공), 교양과목 등 본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

중에서 45학점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자기설계연계전공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이수 및 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연계전공신청서는 자기설계연계전공신청서, 주관학과는 주전공(학과), 연계전공 주임교수는 지도교수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3.6.22.>

제23조의2(공공인재연계전공) 공공인재연계전공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공공인재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인재연계전공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을 거쳐 융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융합교육지원센터는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22.>

2. 공공인재연계전공의 신청자격은 신입학 후 4학기 이상 수료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정규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자

다. 융합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가목 및 나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공공인재연계전공의 주임교수는 신청자가 소속된 학과의 학과장을 원칙으로 하되, 융합교육지원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따로 임명할 수 있다.

4. 공공인재연계전공의 교육과정은 진로 및 직무에 따라 달리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세부 트랙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7.]

제5장 융합전공

제24조(전공개설 및 폐지) ① 융합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융합전공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융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교원은 신청학과(전공) 소속의 전체 또는 일부 교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융합전공의 신설 및 주전공으로 인정하는 융합전공의 승인은 융합교육운영위원회 및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9.12.10., 2022.12.14.>

③ 융합전공 참여학과에서 융합전공의 폐지를 희망하거나 융합전공 개설 후 4학기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최근 2학기 동안의 이수인원이 평균 10명 미만인 경우 융합교육운영위원회 및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④ 융합전공에 주임교수를 둔다.

⑤ 본교에 개설된 융합전공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12.20.>

제2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밖의 교과목을 신설 융합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1. 융합전공 참여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개정 2020.9.1.>

2. 15학점 이내에서 신설하는 융합교과목. 다만, 주전공으로 인정한 융합전공의 경우 18학점 이내에서 신설 <개정 2019.12.20., 2020.9.1.>

3. 그 밖의 학과(전공) 및 교양 과목으로 개설한 과목

② 교육과정은 이수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45학점 이상으로 편성하며, 필요에 따라 전공필수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주전공으로 인정하는 융합전공의 경우 60학점 이상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9.12.20.>

③ 신설하는 융합과목의 3분의 1 이상은 관련분야 산업체전문가가 강의를 담당하거나 팀티칭을 하고, iClass 및 PBL 등의 방법으로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9.1.>

④ 융합전공 과목은 정규학기의 야간 또는 계절학기에 개설할 수 있으며, 집중이수제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절수업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9.1.>

⑤ 삭 제 <2023.12.15.>

제26조(신청자격) 융합전공의 신청자격은 신(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하며, 융합전공의 주전공 신청은 재학 중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20.>

제27조(신청절차 등) ① 융합전공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융합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② 학과(전공)별 융합전공 이수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인원, 제한사유, 전형방법 등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이수 및 포기) ① 융합전공은 복수전공, 부전공 또는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18.2.1., 2019.12.20.>

1. 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가. 주전공 이수 교과목에 대해 12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

나. 신설 융합교과목 9학점 이상 이수 <개정 2023.2.24.>

다. 참여전공 교과목 9학점 이상 이수

라.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개정 2023.2.24.>

2.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가. 주전공 이수 교과목에 대해 6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

나. 신설 융합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개정 2023.2.24.>

다. 참여전공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개정 2023.2.24.>

라.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

3. 융합전공에 개설된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8.20.> <개정 2021.12.14., 2022.02.28.>

가. 주전공 이수 교과목에 대해 3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 <신설 2021.12.14.>

나. 신설 융합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신설 2021.12.14.>

4.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개정 2021.8.20.>

가. 신설 융합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개정 2023.2.24.>

나. 참여전공 교과목 42학점 이상 이수

다.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개정 2023.2.24.>

② 융합전공의 이수 여부는 주관학과에서 졸업사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18.9.1.>

③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가 이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또는 다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가 융합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융합전공 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18.2.1.>

[본조개정 2020.9.1.]

제29조(학위수여) ① 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신청하고 주전공(제1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전공(제1전공) 및 융합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②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신청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본조개정 2019.12.20.]

제30조(산학융합전공) ① 산학융합전공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융합전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2.18.>

1. 산학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19.2.18.>

가. 융합전공 참여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나. 21학점 이내에서 신설하는 융합교과목

다. 그 밖의 학과(전공) 및 교양 과목으로 개설한 교과목

2. 산학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의 전공이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9.2.18.>

가. 주전공 이수 교과목에 대해 9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

나. 신설 융합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다. 참여전공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라.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

② 산학융합전공은 이수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편성, 전형 및 선발 등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2.18.>

[본조개정 2020.9.1.]

제30조의2(마이크로 융합전공) ① 마이크로 융합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마이크로 융합전공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융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마이크로 융합전공은 3개 이상의 마이크로전공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마이크로 융합전공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마이크로 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마이크로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마이크로 융합전공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5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제6장 마이크로전공

제31조(전공개설 및 운영) ① 마이크로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마이크로전공 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융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마이크로전공의 신설은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다만, 마이크로전공 주관학과에서 마이크로전공의 폐지를 희망하거나 마이크로전공 개설 후 2학기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최근 2학기 동안의 이수인원이 평균 10명 미만일 경우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2023.12.15.>

③ 마이크로전공에 주임교수를 둔다. <개정 2022.8.31.>

④ 마이크로전공의 전공명 및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편람」 및 「수강편람」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15.>

제3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단일 학과(전공) 또는 2개 이상의 학과(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3.2.24.>

② 교육과정은 12학점 이상 18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개정 2022.8.31., 2023.12.15.>

제33조(신청자격) 마이크로전공의 신청자격은 신(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다만, 예체능 계열 학과는 실기 및 면접을 통과한 자에 한정하여 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제34조(신청절차 등) ①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마이크로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마이크로전공별 이수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인원, 제한사유, 전형방법 등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수강지도)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의 수강 및 진로 지도는 마이크로전공의 주임교수가 담당한다.

제36조(이수 및 포기) ① 마이크로전공은 교육과정편람에서 정한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학과(전공)에서 개설한 마이크로전공 교과목은 3학점 이내에서 중복하여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학칙」 제29조제1항제3호의 다전공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이수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2022.8.31.>

② 마이크로전공의 이수 여부는 주관 학과(전공)에서 졸업사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③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마이크로전공 이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된다.

④ 마이크로전공 이수자가 마이크로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마이크로전공 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실험실습) 실험실습 또는 기자재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마이크로전공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실험실습비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의2(전북새만금텍 공유대학) ① 전북새만금텍 공유대학(이하 “JST공유대학”이라 한다)에서 개설하는 마이크로전공(이하 “JST마이크로전공”이라 한다)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의 마이크로전공으로 개설한다.

② JST마이크로전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마이크로전공에 관한 규정을 따르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이수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JST공유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28.]

[본장신설 2021.8.20.]

제7장 보칙

제38조(중복인정) 주전공 및 다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다른 다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중복인정 할 수 있다. <신설 2020.9.1.> <개정 2021.8.20., 2021.12.14., 2023.12.15.>

제39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전공 교육과정의 편성과 교과목 신설에 관한 사항은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추진
2. 국가에서 정한 시험 자격의 획득
3. 그 밖에 융합교육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15.]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의 제6장은 2020학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14.>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28.>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6.17.>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8.31.>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14.>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24.>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6.22.>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15.>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2.28.>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2.1., 2019.12.20., 2022.6.17., 2022.12.14., 2023.6.22.>

연계전공 및 학위명

연계전공명	학위명
공공인재연계전공	법행정학사
독서·논술연계전공	문학사
벤처창업연계전공	창업학사
보육학연계전공	보육학사
식품영양학연계전공	이학사
일영멀티링구얼연계전공	일어영어다언어학사
중국비즈니스연계전공	경영학사
중국어관광통역연계전공	글로벌관광학사

※ 연계전공의 계열분류는 주관학과의 계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8.2.1., 2018.9.1., 2019.2.18., 2019.12.20., 2020.9.1., 2021.6.7., 2021.8.20., 2021.12.14., 2022.6.17., 2023.12.15., 2024.2.28>

융합전공 및 학위명

전공명	학위명
경영법학융합전공	경영법학사
관광레저서비스융합전공	관광레저서비스학사
국민연금융합전공	연금학사
국토정보학융합전공	국토정보학학사
글로벌역사문화융합전공	글로벌역사문화학사
글로벌관광콘텐츠개발융합전공	글로벌관광콘텐츠개발학사
글로벌콘텐츠제작융합전공	글로벌콘텐츠제작학사
농생명-ICT융합전공	농생명-ICT학사
대물차량손해사정융합전공	대물차량손해사정학사
드론융합전공	드론융합학사
라이프스타일기획융합전공	라이프스타일기획학사
로컬관광콘텐츠융합전공	로컬관광콘텐츠학사
모빌리티융합전공	공학사
보컬퍼포먼스융합전공	보컬퍼포먼스학사
사회적경제융합전공	사회적경제학사
스마트시티융합전공	스마트시티학사
스마트팜융합전공	스마트팜학사
실감미디어융합전공	실감미디어학사
이차전지융합전공	공학사
일본AI융합전공	글로벌AI공학사
전북역사콘텐츠융합전공	전북역사콘텐츠학사
전북형콘텐츠창업융합전공	전북형콘텐츠창업학사
지역문화콘텐츠융합전공	문화콘텐츠학사
첨단농생명융합전공	첨단농생명학사
탄소융합전공	탄소융합학사
첨단탄소산업융합전공	공학사

전공명	학위명
태권도문화산업융합전공	스포츠문화관광학사
하림산학융합전공	산학융합학사
혁신리빙랩융합전공	혁신리빙랩학사
AI Tech융합전공	AI융합학사
Culinary&Food Service융합전공	조리외식서비스학사
Food R&BD융합전공	Food R&BD학사
Food Tech융합전공	푸드테크학사

※ 융합전공의 계열분류는 주관학과의 계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림산학융합전공에 경영혁신, 공무설비(기계), 공무설비(전기), 기획, 내외자 구매, 노사인사, 물류, 법무, 생명자원관리, 생산운영관리, 설비구매, 정보전략, 제품개발, 품질, 홍보방송제작, 환경안전 트랙을 둔다.

[별표 3] 삭 제 <2023.12.15.>